

# 대학원 무역학과 운영 내규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무역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무역학과 소속 교수들은 무역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무역학과의 세부전공인 무역이론과 무역경영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따른다.

**제5조 (과목개설)**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지도세미나, 통계조사방법론연구를 비롯한 각 세부전공에 부합하는 과목을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전임교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관련 사유서와 공문을 제출하여 외래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1학기 이후 학생이 지도교수를 신청·변경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제출한다.

##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전공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이하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공 종합학력시험 신청기간내 해당 연구실적물(학술지 또는 별쇄본) 1부를 제출한 원생은 전공 종합학력 시험과목을 모두 면제한다.

- 가. 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 이상의 게재자
- 나. 연구재단(KCI) 등재 후보 학술지 이상의 게재자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 가. 제8조 ‘무역학과 종합학력시험 면제자격조건’과 함께 이외의 기타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회의를 통해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며, 대학원의 규정과 대학원 석·박사학위청구 심사절차 및 일정 그리고 대학원 무역학과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 및 절차를 기준으로 삼아 충실히 준수하며 따른다(2017.03.01. 시행).
- 나. 기타 모든 전공 종합학력시험관련 신청 절차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은 ‘신청인’이 대학원의 규정과 신청기간을 충분히 숙지함을 전제로 주임교수의 시험관리 하에 담당 조교, 출제 및 채점 교수 등 관련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하에서 진행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로만 한정한다.

##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무역학과는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 학위작품 대체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해당사항 없음

제14조 (논문 심사신청 및 절차)

1.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원생 (이하 ‘신청인’ )은 대학원 규정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절차 및 일정 (이하 ‘심사일정’ )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추가로 갖추고 소정의 연구 실적물을 반드시 학위청구논문의 첫 신청 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03.01. 시행).

가. 박사학위 청구논문 첫 신청 시 대학원 규정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류 이외 ‘신청인’ 이 주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서 연구재단(KCI)등재 또는 후보 학술지 이상 게재된 연구실적물(학술지 또는 별쇄본)1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단, ‘신청인’ 이 외국인인 경우 주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서 일반학술지(부설 및 일반연구소의 발간 학술지포함)에 게재된 연구실적물(학술지 또는 별쇄본 1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나. 석사학위 청구논문 첫 신청 시 ‘신청인’ 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류만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5조 (예비발표) 예비발표 일정은 지도교수가 ‘신청인’ 의 처지를 십분 고려하여, 그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교수 및 원생들이 자유의지로 함께 참여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신청인’ 및 원생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인 예비발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면 공지 후 시행한다. 예비심사 통과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 발표 시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제16조 (논문심사일정) ‘신청인’ 은 학위청구논문의 예비발표를 마친 후 대학원 규정과 ‘심사일정’ 내에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본 심사를 반드시 거친 후 합격된 학위논문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학위청구관련 절차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은 대학원의 규정과 ‘심사일정’ 을 충분히 숙지함을 전제로 ‘신청인’ 및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하에서 진행한다.

제17조 (논문심사위원) 석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 교내 3인, 박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내3인, 교외 2인으로 논문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18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해당사항 없음

제19조 (논문대체 제출) 해당사항 없음

##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20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